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황운하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호 5757

발의연월일: 2024. 11. 21.

발 의 자:황운하·서왕진·김용민

차규근 • 조계원 • 김동아

김현정 · 김문수 · 신장식

김준형 • 정춘생 • 장경태

김재원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 등이 제정·개정 또는 폐지되는 경우 이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제출하고,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하여는 상임위원회가 그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하고 본회의 의결을 거쳐 정부에 송부하도록 규정함.

그런데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에 대한 상임위원회의 검토내용을 본회의 의결을 거쳐 송부하는 것만으로는 정부가 법 취지를 왜곡하거나 위임 범위를 일탈하여 국민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자의적인 행정입법을 하는 경우에 대하여 국회가 입법권을 가진 헌법기관으로서 이를 방지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상임위원회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제출하거나 시행 중 인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내용을 송부하여 수정·변경을 요청하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60일 이내에 수정·변경 요청 사항을 처리하도록 하여 국회의 행정입법에 대한 통제권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98조의2).

법률 제 호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8조의2제3항 중 "그"를 "제1항에 따라"로 하고, 같은 항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며, 같은 조 제4항 중 "대통령령 또는 총리령이"를 "대통령령등이"로, "검토의 경과와 처리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검토 결과를 송부하고 수정·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로 하고, 같은 조제5항을 다음과 같이 하며, 같은 조 제6항부터 제8항까지를 각각 삭제한다.

다만, 시행 중인 대통령령등에 대하여도 법률 위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요청받은 수정·변경 사항을 처리하고 그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혅 했 개 정 아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제98조의2(대통령령 등의 제출 등) ①・② (생 략) 등)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상임위원회는 위원회 또는 상설소위원회를 정기적으로 개 회하여 그 소관 중앙행정기관 ----제1항에 따라---이 제출한 대통령령·총리령 및 부령(이하 이 조에서 "대통 령령등"이라 한다)의 법률 위 반 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단서 신설> -----. 다만, 시행 중인 대 통령령등에 대하여도 법률 위 반 여부 등을 검토할 수 있다. ④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대통령령 또는 총리 ----대통령령등이-----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검토의 경과와 처리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의견 등을 기재한 검토결과보 검토 결과를 송부하고 수정・ 고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변경을 요청할 수 있다. 한다. ⑤ 의장은 제4항에 따라 제출 ⑤ 제4항에 따라 검토 결과를 된 검토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송부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보고하고, 국회는 본회의 의결 송부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로 이를 처리하고 정부에 송부 한다.

⑥ 정부는 제5항에 따라 송부 〈삭 제〉 받은 검토결과에 대한 처리 여 부를 검토하고 그 처리결과(송 부받은 검토결과에 따르지 못 하는 경우 그 사유를 포함한 다)를 국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⑦ 상임위원회는 제3항에 따른 검토 결과 부령이 법률의 취지 또는 내용에 합치되지 아니한 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소관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 용을 통보할 수 있다.

<u>⑧ 제7항에 따라 검토내용을 <삭</u> 제> 통보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통보받은 내용에 대한 처리 계 획과 그 결과를 지체 없이 소 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⑨ (생략)

요청받은 수정ㆍ변경 사항을 처리하고 그 처리결과를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삭 제>

⑨ (현행과 같음)